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-126호

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(E-7-4)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 공고

뿌리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**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(E-7-4)로 체류자격**을 **전환**할 수 있도록 **산업통상자원부 추천**을 **실시**하고자 하오니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3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추천 개요

○ 2023년 뿌리산업 분야에 별도쿼터(400명)를 정하여 신청 요건을 갖춘 자를 장기체류비자(E-7-4) 전환 대상자로 추천

2. 신청 요건 : 아래 가, 나 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

가. 외국인 고용 뿌리기업 신청 요건

○ 기준일 현재 유효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를 보유한 기업

* 대한민국비자포털(www.visa.go.kr)에서 신청·발급

나. 외국인 근로자 신청 요건 :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○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-9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

*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

○ 기준일 현재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, E-7-4 전환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법무부) 최저기준* 이상인 자

*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52점 이상 또는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득점 72점 이상(별첨 참조)

3. 신청방법 및 추천방식

○ **신청방법 :** 서류 원본 우편 제출

- **(제출처)**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'뿌리산업 부처추천' 담당자 앞

○ **제출서류 :** 신청요건 증빙 서류

①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신청서(별지 서식)
② 외국인 등록증 사본(앞면, 뒷면) 및 여권 사본
③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(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)
④ 고용추천서(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출력)
⑤ 가·감점 증빙서류(우수 뿌리기업 지정증 또는 선정증 등)
⑥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)
* 상반기 신청자 : 2019년~2021년, 하반기 신청자 : 2020년~2022년
** 3년 평균 산업재해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
○ **추천방식 :** 신청요건 충족자 중 가·감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

- **(가점)** 고용추천서 점수가 10점인 경우(+2점), 우수 뿌리기업*에 지정·선정된 경우(+3점), 뿌리산업 발전유공자(단체부문) 선정된 경우(+1점),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**(기준일 기준)

* 뿌리기술 전문기업, 뿌리기업 명가,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중 1건만 인정하며, 뿌리기업 명가 보유시 뿌리산업 발전유공자(단체부문) 가점은 인정하지 않음
** 신청 기업에서의 근속기간 : 5~6년(1점), 6~7년(2점), 7~8년(3점), 8년 이상(4점)

- **(감점)** 최근 3년 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, 재해율이 모두 동종동규모 평균보다 높은 기업(-1점)

- **(동점 발생시)** ① 감점이 없는 경우 → ② (①이 같은 경우) 신청 기업 근속일수가 많은 경우 → ③(②가 같은 경우) 잔여 체류기간이 적은 순으로 선발

○ **문의처 :**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'부처추천' 담당자
(TEL) 02-2183-1643
(E-mail) ssh3620@kitech.re.kr
(Fax) 02-2183-1649

4.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추진절차

부처추천 신청	⇨	부처추천 신청서류 심사	⇨	부처추천 결과 통보	⇨	체류자격 변경 신청
* 신청서류 우편 제출 (신청인→뿌리센터)		* 뿌리센터		* 추천공문 발송 (뿌리센터→신청인)		* 체류자격 변경 서류 제출 신청인→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* 점수제 충족 여부 심사

○ 추진일정

구분	일정	선발인원	기준일
상반기	신청기간 : 2023.02.20.(월) ~ 02.24.(금)	300명	2023.02.17.(금)
	결과통보 및 추천공문 발송 : 2023.03.06.(월)		
	체류자격 변경 신청 : 2023.03.06.(월) ~ 03.17.(금)		
하반기	신청기간 : 2023.07.10.(월) ~ 07.14.(금)	100명	2023.07.07.(금)
	결과통보 및 추천공문 발송 : 2023.07.24.(월)		
	체류자격 변경 신청 : 2023.07.24.(월) ~ 08.04.(금)		

* 잔여 선발인원 발생시 하반기 탈락자 중 우선순위 순으로 추천
* 신청서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, 신청기간 전 소인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

5. 유의사항

○ 부처추천을 받더라도 이후 **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심사 결과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**될 수 있음

○ **신청인**이 **제출**한 일체의 **서류**는 **반환되지 않음**

○ **숙련기능인력 점수제, 업체당 E-7 허용인원 등**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**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문의**

〈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선발 참고자료〉

• 2023년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(E-9→E-7-4) **자격요건**과 **쿼터 관련 '2023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' 참고**

* **출처 : 법무부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**

[별지 서식]

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[E-7-4]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신청서

외국인	성명(영문)		외국인 등록번호			
	이 메 일		체류기간 만료일			
고용기업	기 업 명		사업자등록번호			
	뿌리기술분야	주조 □ 금형 □ 소성가공 □ 용접 □ 표면처리 □ 열처리 □ 사출·프레스 □ 정밀가공 □ 적층제조 □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□ 로봇 □ 센서 □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□ 엔지니어링 설계 □				
	대표자성명		연 락 처		이 메 일	
	담당자성명		연 락 처		이 메 일	

제출서류

1. 외국인등록증 사본(앞면, 뒷면) 및 여권 사본

2.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
 (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)

3. 고용추천서
 (대한민국비자포털 출력)

4. 가·감점 증빙서류
 - 고용추천서 점수 10점 : 고용추천서로 확인
 - 우수 뿌리기업 : 지정증·선정증으로 확인
 -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: 해당 표창장 사본
 - 근속기간 : 경력증명서로 확인
 - 산업재해율 :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

5.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
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)
 * 상반기 신청자 : 2019년~2021년
 * 하반기 신청자 : 2020년~2022년

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(E-9 등 →E-7-4)을 위해 귀 귀관의 부처추천을 신청합니다.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~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,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센터소장이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○ 신 청 일 : 년 월 일

○ 기업대표 : (서명 또는 인)

○ 외 국 인 : (서명 또는 인)

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센터소장 귀하

별첨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(법무부)

□ 적용대상(뿌리산업)

- 체류자격 : 비전문취업(E-9)
- 취업기간 : 최근 10년 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
 ※ 다만 취업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
- **제외 : 형사범, 세금체납자,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**

 <참고> : 형사범은 벌금형(벌금액 50만원 이상)이상을 말하며,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

□ 점수요건 :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

① 산업기여가치'**연간소득'점수가 10점 이상**인 자로 총 득점이 **52점 이상**인 자
② **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**인 자로 **총 득점이 72점 이상**인 자

□ 뿌리기업 E-7-4 고용허용 인원

국민고용 피보험자 수	고용허용인원
• 5명 이상 9명 이하	2명
• 10명 이상 19명 이하	3명
• 20명 이상 29명 이하	4명
• 30명 이상 39명 이하	5명
• 40명 이상 49명 이하	6명
• 50명 이상 59명 이하	7명
• 60명 이상	8명

가. 기본항목 : 최대 95점

1) 산업 기여 가치

◆ 연간소득 : 최대 20점

구 분	3,300만원 이상	3,000만원 이상	2,600만원 이상
배 점	20	15	10

<범례> :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,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(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)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

2) 미래 기여 가치

◆ 숙련도 : 최대 20점

구 분	자격증 소지Ⓐ			기량검증 통과Ⓑ
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	
배 점	20	15	10	10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Ⓐ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"기술·기능분야"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(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)
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

◆ 학력 : 최대 10점

구 분	학사	전문학사	고졸
배 점	1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<법례> :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

◆ 연령 : 최대 20점

구 분	~ 24세	~ 27세	~ 30세	~ 33세	~ 36세	~ 39세
배 점	20	17	14	11	8	5

<참고> : 만 나이로 계산 (출생일 산입하여 계산)

◆ 한국어능력 : 최대 25점

토픽(TOPIK)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
20	15	10	5

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
25	20	15	10

<참고> : 토픽은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,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(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)

나. 선택항목 : 최대 129점

◆ 근속기간 :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

<법례> :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,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,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

◆ 보유 자산 : 최대 35점

구 분	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Ⓐ					국내 자산Ⓑ		
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6천만원 이상	4천만원 이상	2천만원 이상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
배 점	15	12	9	7	5	20	15	10

<참고> : Ⓐ와 Ⓑ간 중복 산정 가능(단, 이 경우 Ⓑ는 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)
<법례> : Ⓐ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

Ⓑ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(토지/주택/건물)만 해당
Ⓐ와 Ⓑ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: 최대 20점

구 분	뿌리산업 분야 및 농.축산.어업.조선업.내항상선 분야 Ⓐ			일반 제조업, 건설업 분야 등Ⓑ		
	8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	8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
배 점	20	15	10	2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법례> : Ⓐ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, 농축산어업,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: 최대 10점

구 분	국내 교육경험Ⓐ		국내 연수경험Ⓑ	
	학사이상 취득	전문학사 취득	1년 이상	6개월~1년 미만
배 점	10	8	5	3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법례> : Ⓐ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

Ⓑ는 국내 사설기관연수(D-4-6)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

◆ 가점 : 최대 54점

구 분	국내 유학경험 Ⓐ			관련 중앙부처 추천 Ⓑ	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Ⓒ	읍, 면지역 근무경력 Ⓓ		
	석사 이상	학사 이하	전문 학사			4년이상	3년이상	2년이상
배 점	10	5	3	10	5	10	7	5
구 분	사회 공헌 Ⓔ			납세실적 (300만원이상) Ⓕ		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Ⓖ		
	표창		사회 봉사			1개월	2개월	3개월
배 점	5		3	5		2	3	4

구 분	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Ⓗ		
	4년 이상	3년 이상	2년 이상
배 점	5	3	2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

<법례> : Ⓐ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'학위소지' 및 '학력'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(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)

Ⓑ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,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

Ⓒ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, 가-2-4.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

Ⓓ 읍,면지역 기준 :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, 면지역에 위치할 것 / 어선원,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

Ⓔ (훈·포장/표창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(건당 2점, 최대 5점), (자원봉사)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(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-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) : 표창/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(1개만 적용)

Ⓕ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

Ⓖ 비전문취업(E-9)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.8.21.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,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(참여여부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)

Ⓗ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(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)

다. 감점항목 : 최대 50점

구 분	출입국관리법 위반Ⓐ			기타 국내 법령 위반Ⓑ		
	1회	2회 이상	3회 이상	1회	2회 이상	3회 이상
배 점	5	10	50	5	10	50

<참고> : 항목 간 합산(Ⓐ+Ⓑ)점수를 적용함

<벌례> : 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(처분면제, 과태료 포함)하며,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

Ⓑ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

라. 업종.업체별 허용인원

업종별 \ 외국인 허용인원		2명	3명	4명	5명	6명	7명	8명
제조업 (국민피보험자 수)	일반	10 – 49명	50-99명	100-149명	150-199명	200-249명	250-299명	300명 이상
	뿌리	5-9명	10-19명	20-29명	30-39명	40-49명	50-59명	60명 이상
건설업 (연평균 공사금액)		50억원 미만	50-100억원 미만	100-200억원 미만	200-300억원 미만	300-400억원 미만	400-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
농축어업 (국민피보험자 수)		9인 이하	10명-19명	20-29명	30-39명	40-49명	-	-

<참고> 단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

※ **숙련기능인력 점수제, 업체당 E-7-4 허용인원 등**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**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**